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 28 선고 2020재가단11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광주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원

담당변호사 김용준, 이봉희

변론 종결 2021. 1. 14.

판결 선고 2021. 1. 28.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판결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83. 2. 3. 접수 제20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1가단6589 판결은 청구취지에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이전 사

실인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원인 사실을 은폐하고 사실인정 한마디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패소시킨 무효판결로서 이후 이를 기초로 원고를 패소시킨 12건의 판결도 무효이므로, 이 사건 청구 이전의 판결들은 무효판결임을 확인한다¹⁾).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2. 12. 30.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경기 광주군 B 전 1,677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800평을 대금 6,32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공유재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원고에게 위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1983. 1. 13.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B 전 877평(이하 '이 사건잔여 토지'라 한다) 및 C 전 800평(피고가 협의취득한 토지 부분,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한 뒤 1983. 2.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잔여 토지와 이 사건 토지는 1986. 11. 18. 그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1993. 7. 28. C 잡종지 2,358㎡ 및 D 잡종지 287㎡로 분할되었으며, C 잡종지 2,358㎡는 1998. 7. 7. C 잡종지 1,725㎡ 및 E 잡종지 633㎡로 분할되었다(그 후 이 사건 토지는 지목변경 및 행정구역 명칭변경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가 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기망과 원고의 착오에 의하여 체결되었거나, 원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불공정하게 체결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1가단6589호로 이 사건 계약의 취소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2. 7. 24. 원고 패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93. 4. 20. 항소기각(수원지방법원 92나6010호), 1993. 9. 28. 상고기각(대법원 93다25844호)으로 확정되었다.

- 마. 그 후 원고는 위 수원지방법원 92나6010호 판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93재나 86호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1994. 4. 29.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94. 10. 25. 상고기각(대법원 94다29195호)으로 확정되었다.
- 바.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95재나66호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1996. 2. 28. 부적법한 소제기임을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판결, 수원지방법원 92나6010호 판결 및 수원지방법원 95재나66호 판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96재나18호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1996. 7. 10. 원고 패소판결(일부 각하, 일부 기각)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96. 11. 1. 상고기각(대법원 96다35750호)으로 확정되었다.
- 사.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판결, 수원지방법원 92나6010호 판결, 수원지방법원 93재나86호 판결, 수원지방법원 95재나66호 판결 및 수원지방법원 96재나18호 판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96재나94호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1997. 4. 9. 위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판결(일부 각하, 일부 기각)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아. 원고는 재차 이 사건 판결, 수원지방법원 92나6010호 판결, 수원지방법원 93재나 86호 판결, 수원지방법원 95재나66호 판결, 수원지방법원 96재나18호 판결 및 수원지방법원 96재나94호 판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97재나53호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1998. 5. 1. 또 다시 원고 패소판결(일부 각하, 일부 기각)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1998.5. 26. 확정되었다.
- 자. 원고는 1998. 5. 27.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8가합3814호로 대금수령과 상환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9. 7. 16. 위 소송이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99. 8. 25. 확정되었다.
- 차. 원고는 2009. 11. 18. 재차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합15257호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및 이 사건 판결의 파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0. 6. 22. 위 소 중 판결 파기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0. 7. 13. 확정되었다.
- 카. 원고는 다시 2013. 3. 12.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2623호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과 이 사건 판결과 이를 기초로 한 그 이후의 판결들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3. 9. 27. 위판결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선고되고 2013. 10. 1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소 중 판결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주장 요지

- (1) 원고는 이 사건 판결과 이를 기초로 한 이후의 판결들은 사실관계를 은폐, 왜곡한 사실관계를 왜곡한 중대한 흠이 있는 무효인 판결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들이 무효임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확정판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의 재심절차에 의하여 다툴 수 있을 뿐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는 법원도 스스로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않는 것인데, 재심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미 확정된 판결이 무효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해당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한편 원고는 위 판결들이 무효이므로 재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판결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당해 판결이 법관 아닌 자에 의하여 행하여졌거나 소가 제기된바 없음에도 행하여지는 등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흠이 존재하여야 하나, 이 사건 판결과 그 이후 이루어진 관련 판결들에서 이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찾아볼수는 없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판결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3.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800평(이 사건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632만 원에 분할 매도하면 잔여 토지에 쓰레기를 매립하고 지목을 변경해 주겠다고 속여 시가의 1/25도 되지 않는 헐값에 매수한 것은 반사회적법률행위에 해당하고, 잔여토지에 쓰레기를 매립하여 잡종지로 지목변경해 주겠다는 조건은 불법조건에 해당하므로, 무효인 위 매매계약에 의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말소등기청구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라 할 것으로서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105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1가단6589호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후 이 사건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같은 법원 2009가합15257호로 재차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다시 같은 법원 2013가합2623호로 이 사건 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확정된 선행소송들의 소송물과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모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으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의 원고의 주장사유들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 법원이 선행소송과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판결무효확인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상철

별지

부동산 목록

1. 광주시 F 잡종지 1725㎡
2. 2. G 도로 633㎡
3. 3. H 도로 287㎡, 끝.

1) 원고는 ' 이 사건 소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01가단6589 사건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의 취지라면 그에 따라 청구취지를 정정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에 대하여 청구취지를 유지하면서 '형식적으로 확정된 판결이라도 그 판결에 무효인 사유가 있으면 신소의 제기가 허용되고 무효인

판결은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담긴 2020. 5. 22.자 보정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소가 재심청구의 취지가 아니고 새로운 소의 제기라는 점을 밝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이미 부여된 사건부호(재가단)와 관계 없이 재심청구가 아닌 새로운 소의 제기로 보고, 이 법원에 변론관할이 생겨 단독판사가 심리,판단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판단한다.